**세 법**

**2/16**

**제1교시**

|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한다. |

**【문제 1】 (10점)**

**(물음 1)** 다음은 ㈜한라의 제7기(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라의 제7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  |
| --- |
| **<자료1>**  1. 전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기말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00,000원  ② 대손금부인액(외상매출금) 20,000,000원  ③ 대손금부인액(미수금) 10,000,000원  2. 당기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외상매출금에 대한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10,000,000원은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미수금에 대한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5,000,000원은 당기에 회수되고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되었다.  ② 당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다. |

|  |
| --- |
| ③ 장부상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100,000,000원, 당기 설정액은 20,000,000원 그리고 당기 상계액은 50,000,000원이다.  ④ 당기 대손충당금 손금한도액은 60,000,000원이다.  ⑤ 전기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물음 2)** 다음은 ㈜금성의 제7기(2007.1.1～200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금성의 제7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  |
| --- |
| **<자료2>**  1. ㈜금성은 당기 중『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  2.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성은 ㈜백두에 대한 매입채무에 대하여 장부금액(100,000,000원)과 현재가치(60,000,000원)의 차액 을 채무조정이익(상대계정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0원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40,000,000  (대) 채무조정이익 40,000,000  (차) 이자비용 5,000,00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0 |

**(물음 3)** 다음은 ㈜한국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답하시오.

**세 법**

**제1교시**

**3/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3>**  1. ㈜한국은 유상증자를 위하여 100,000주의 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발행하였다.  2. 유상증자 전 ㈜한국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40,000원이다.  3. 유상증자 전 ㈜한국의 주주별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주주 | 주식수 | 지분비율 | | ㈜태평양 | 50,000주 | 50% | | ㈜대서양 | 10,000주 | 10% | | (재단법인)한강 | 10,000주 | 10% | | ‘갑’(거주자) | 20,000주 | 20% | | ‘을’(거주자) | 10,000주 | 10% | | 합계 | 100,000주 | 100% |   4. ㈜태평양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며, 당해 실권주는 다른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재배정되었다.  5. ㈜태평양 및 ㈜대서양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태평양, ㈜대서양 및 ‘갑’(거주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1)㈜태평양 및 ㈜대서양의 위 유상증자에 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2)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문제 2】(30점)**

다음은 ㈜동해(이하 “회사”라 함)의 제7기(이하 “당기”라 함) 사업연도(2007.1.1～2007.12.31) 법인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며,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1)** 회사의 접대비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아래 제시된 답안양식에 따라 제7기(2007.1.1～2007.12.31)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 |
| 구분 | 조정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1,000 | 상여 |
| 익금불산입 | 자산 임의평가차익 | 2,000 | △유보 |
| … | … | … | … |
| … | … | … |  |

(계산근거)

① 2,000 - 5,000 × 20% = 1,000원

② 5,000 - 3,000 = 2,000원

③ …

④ …

|  |
| --- |
| **<자료1>**  1.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의 금액은 45,000,000원이며,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회사의 제품(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서 시가는 4,000,000원, 원가는 5,000,000원임)을 거래처에 증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대비 4,400,000  잡손실 1,000,000  (대) 제 품 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400,000 |

|  |  |
| --- | --- |
| ② 전기 말에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 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카드대금결제일인 2007.1.27에 이를 장부상 접대비로 계상하였다.  2. 건설중인 자산(당기 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에 배부된 접대비 5,000,000원 중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접대비 1,000,000원(임원이 지출함)이 포함되어 있다.  3.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0억원(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50억원 포함)이다. 한편,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10억원을 익금산입하였다(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답안에 포함하지 말 것).  4.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0,000,000원＋100억원 초과액 × 0.1% | |

**세 법**

**4/16**

**제1교시**

**(물음 2)** 회사의 대여금 및 차입금 등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물음 1)에 제시된 답안양식에 따라 제7기(2007.1.1～2007.12.31)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
| --- |
| **<자료2>**  1. 회사의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7.4.1에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10,000,000원을 대여(당기의 대여금 적수는 25억원으로 가정함)하였다. 동 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이자수령액 및 장부상 미수이자 계상액은 없다.  ② 2007.12.1 A법인(자회사)에 3년 후 원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영업자금 30,000,000원을 대여(당기의 대여금 적수는 10억원으로 가정함)하였으며,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 50,000원을 장부상 미수이자(이자수익)로 계상하였다.  2. 회사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차입금A : 80,000,000원(전기에 특수관계가 없는 A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16%로 차입하였으며, 2007.6.30에 전액 상환하였다.)  ② 차입금B : 20,000,000원(전기에 특수관계가 없는 B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9%로 차입하였으며, 2007.9.30에 전액 상환하였다.)  ③ 차입금C : 50,000,000원(전기에 대표이사로부터 연이자율 5%로 차입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미상환하였다.)  ④ 위 차입금 A, B, C에 대한 지급이자 총액은 10,000,000원이며, 총차입금 적수는 350억원으로 가정한다.  3.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7.3%로 가정한다. |

**세 법**

**제1교시**

**5/16**

**(물음 3)** 회사의 기계장치(제조업)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① 기계장치B와 ② 기계장치C의 제7기(2007.1.1～2007.12.31) 감가상각부인액을 계산하시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단, 적용가능한 최단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상각범위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것.

|  |  |
| --- | --- |
| 항 목 | 감가상각부인액 |
| ① 기계장치B |  |
| ② 기계장치C |  |

|  |
| --- |
| **<자료3>**  1. 회사는 전기말까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계장치(업종별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다.  2. 기계장치B  ① 2007.7.20에 기계장치A(취득가액 15,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를 특수관계가 없는 ㈜서해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고 즉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기계장치A와 B의 시가는 모두 8,000,000원이며, ㈜서해는 기계장치B를 취득 후 5년간 사업에 사용하였다.  (차) 기계장치(B) 8,000,000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대) 기계장치(A) 15,000,000  ② 회사가 기계장치B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당기 감가상각비는 4,000,000원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계장치C  ① 2005.10.15에 기계장치C(신품)를 10,000,000원에 취득하고, 동 가액을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② 회사는 제5기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기계장치C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제5기(2005.1.1～2005.12.31) : 2,000,000원  ∙제6기(2006.1.1～2006.12.31) : 0원  ∙제7기(2007.1.1～2007.12.31) : 3,000,000원  4.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분 | 4년 | 6년 | 8년 | | 정액법 | 0.250 | 0.166 | 0.125 | | 정률법 | 0.528 | 0.349 | 0.313 | |

**세 법**

**6/16**

**제1교시**

**(물음 4)** 회사의 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물음 1)에 제시된 답안양식에 따라 제7기(2007.1.1～2007.12.31)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4>**  1. 공사기간 : 2006년 7월 1일 ～ 2008년 10월 31일  2. 도급금액 : 480,000,000원  3. 공사원가내역   |  |  |  | | --- | --- | --- | | 구 분 | 제6기  (2006.1.1～12.31) | 제7기  (2007.1.1～12.31) | | 발생공사원가 | 100,000,000원 | 194,000,000원 | | 추가공사원가  예상액 | 300,000,000원 | 196,000,000원 |   주) 제6기와 제7기 추가공사원가예상액에는 하자보수비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4. 회사는 당기에 168,000,000원을 공사수익으로계상하였으며, 당기 발생공사원가 194,000,000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한편,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4,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5. 위 ‘3’의 공사원가내역 중 당기 발생공사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기 공사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인건비 10,000,000원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

**(물음 5)** 회사의 투자주식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물음 1)에 제시된 답안양식에 따라 제7기(2007.1.1～2007.12.31)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  |
| --- |
| **<자료5>**  1. 투자주식(코스닥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식임)의 기초잔액은 200,000,000원으로서 2006.3.20에 1주당 10,000원에 취득(18,000주, 지분비율 5%)하였으며, 전기 말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영업외수익) 2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 2007.5.20에 A법인으로부터 무상주 5,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시가는 10,000원이며, 지분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없음)를 수령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A법인이 무상증자를 위하여 자본에 전입한 잉여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 60%  ② 자기주식처분이익(기타자본잉여금) : 40%  3. 2007.11.30에 A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20%를 반환하고 감자대가(1주당 20,000원)를 수령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92,000,000  (대) 단기매매증권 40,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2,000,000  (영업외수익)  4. 회사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기의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

**세 법**

**제1교시**

**7/16**

**(물음 6)** 다음은 제7기 사업연도(2007.1.1～2007.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경정내역이다.

|  |
| --- |
| **<자료6>**  1. 회사는 제7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2008.3.28(신고기한은 2008.3.31)에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200,000,000원  ② 이월결손금 : (-)50,000,000원  ③ 과세표준 : 150,000,000원  ④ 산출세액 : 25,500,000원  ⑤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3,000,000원  ⑥ 기납부세액 : (-)2,500,000원  ⑦ 법인세납부세액 : 20,000,000원  2. 관할세무서장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경정에 의한 산출세액은 38,000,000원이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을 통한 매출누락액 20,000,000원과 매출원가누락액 10,000,000원  ②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함)에 의한 손금과다계상액 30,000,000원  ③ 세무조정 착오로 인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계상액 15,000,000원  ④ 세무조정 착오로 인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누락액 5,000,000원  ⑤ 계산착오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과다공제되었다. 회사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당기 발생액은 10,000,000원이며, 과거 4년간 발생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3기(2003.1.1～2003.12.31) : 3,000,000원  ∙ 제4기(2004.1.1～2004.12.31) : 7,000,000원  ∙ 제5기(2005.1.1～2005.12.31) : 0원  ∙ 제6기(2006.1.1～2006.12.31) : 10,000,000원 |

|  |
| --- |
| 3.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한 법인세 추징세액을 고지한 날은 2008.7.9이며, 회사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날은 2008.7.15이다. |

(1) 관할세무서장의 경정고지에 의하여 회사가 추가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제외)을 계산하시오. 단,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말 것.

(2)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시오.

(3) 회사가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시오.

**세 법**

**8/16**

**제1교시**

**【문제 3】(25점)**

다음은 거주자인 ‘갑’의 2007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자료1>**  1. ㈜A의 임원으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다.  2. 비상장법인인 ㈜B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① 금전배당 : 70,000,000원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 : 20,000,000원  ③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의 액면가액 : 10,000,000원  3. 이자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① 회사채이자 : 60,000,000원  ② 정기예금이자 : 50,000,000원  4. 기타소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다음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① 승마투표권환급금 : 4,500,000원  ② TV 출연료 : 2,000,000원  ③ D대학 최고경영자과정 특별강연료 : 5,500,000원  ④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확인되는 필요경비 5,000,000원) : 7,500,000원    5. 종합소득공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종합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  |
| --- |
| ① 인적공제 : 7,500,000원  ② 보험료공제 : 3,000,000원  ③ 의료비공제 : 5,000,000원  ④ 교육비공제 : 4,000,000원  ⑤ 기부금공제 : 500,000원  합 계 : 2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2>**  1. 기본세율   |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8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7%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590만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6% | | 8천만원 초과 | 1,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2.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공제액(50만원 한도) |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 × 55% | | 50만원 초과 | 275,000원 +  (산출세액 - 50만원)×30% |   3.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14%  4.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20% |

**(물음 1)** 위의 자료 중 근로소득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거주자 ‘갑’의 2007년 과세기간의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②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시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  |  |
| --- | --- |
| 항 목 | 금 액 |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
| ②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

**(물음 2)** 위의 자료 중 배당소득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거주자 ‘갑’의 2007년 과세기간의 ① 배당소득금액과 ②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  |  |
| --- | --- |
| 항 목 | 금 액 |
| ① 배당소득금액 |  |
| ② 배당세액공제액 |  |

**(물음 3)** 거주자 ‘갑’의 2007년 과세기간의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위의 자료 중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거주자 ‘갑’이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② 절감가능한 소득세액을 계산하시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  |  |
| --- | --- |
| 항 목 | 금 액 |
| ① 기타소득금액 |  |
| ② 절감가능 소득세액 |  |

**세 법**

**제1교시**

**제1교시**

**9/16**

**(물음 4)** 위의 자료 중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거주자 ‘갑’의 2007년과 2008년 과세기간 귀속분 소득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거주자 ‘갑’의 ① 2008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② 2008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2005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120,000,000원 존재하고, 2008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공제액은 2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단위:원)

|  |  |  |
| --- | --- | --- |
| 소 득 구 분 | 2007년 과세기간 귀속분 | 2008년 과세기간 귀속분 |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4,000,000 | 6,000,000 |
| ② 근로소득금액 | 100,000,000 | 60,000,000 |
| ③ 기타소득금액 | 5,000,000 | 4,000,000 |
| ④ 사업소득금액 | △10,000,000 | △20,000,000 |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  |  |
| --- | --- |
| 항 목 | 금 액 |
| ① 2008년의 종합소득금액 |  |
| ② 2008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

**(물음 5)** 위의 자료 중 이자소득과 사업소득(결손금 10,000,000원 가정)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07년 과세기간의 소득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얼마 이상 공제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액은 10,000,000원으로 가정한다. 계산과정을 명시하고 정답을 다음 양식과 같이 제시하시오.

|  |  |
| --- | --- |
| 항 목 | 금 액 |
|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액 |  |

**세 법**

**10/16**

**제1교시**

**【문제 4】(20점)**

과세제품 제조업과 면세제품 제조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동목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  |
| --- |
| **<자료>**  1.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제품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① 과세제품의 매출 내역  • 국내매출액 420,000,000원  •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액 123,000,000원  • 해외수출액 120,000,000원  합계 663,000,000원  ② 면세제품의 매출 내역  • 국내매출액 257,000,000원  • 해외수출액 100,000,000원  합계 357,000,000원  2. 과세제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채권(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임) 중에서 11,000,000원이 2007년 2월 5일 대손확정되었고, 추가적으로 5,500,000원이 2007년 5월 7일 대손확정되었다.  3.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입 및 경비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면세농산물을 2007년 5월에 324,360,000원 매입하여 이 중에서 54,060,000원은 과세제품 제조에 사용되었고, 162,180,000원은 과세제품과 면세제품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08,120,000원은 2007년 6월말까지 사용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기타 원재료 및 부재료의 기간별 및 사용용도별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동 매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사용용도 | 기간 | | 합계 | | 1월∼3월 | 4월∼6월 | | 과세제품 제조 | 120,000,000 | 200,000,000 | 320,000,000 | | 면세제품 제조 | 160,000,000 | 100,000,000 | 260,000,000 | | 과세제품 및  면세제품 제조 | 220,000,000 | 240,000,000 | 460,000,000 | | 합계 | 500,000,000 | 540,000,000 | 1,040,000,000 |   ③ 2007년 6월 1일 15,000,000원의 소형승용차를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④ 접대비 지출액이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70,000,000원 발생하였고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90,000,000원 발생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4.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각 기간별 및 각 제품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기간 | 제품 | | 합계 | | 과세제품 | 면세제품 | | 2006년 7월∼9월 | 630,000,000 | 270,000,000 | 900,000,000 | | 2006년 10월∼12월 | 360,000,000 | 240,000,000 | 600,000,000 | | 2007년 1월∼3월 | 459,000,000 | 391,000,000 | 850,000,000 |   5. 2007년 3월 4일 과세제품을 매출하였고(공급가액 : 20,000,000원) 이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당해 매출거래에 대한 신고가 직원의 업무실수로 예정신고시 누락되었기에 확정신고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록함으로써 신고·납부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것 이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물음 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할 ① 과세표준과 ② 매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  |  |
| --- | --- | --- |
|  | 계산내역 | 금액 |
| ① 과세표준 |  |  |
| ② 매출세액 |  |  |

**세 법**

**제1교시**

**11/16**

**(물음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제할 금액을 제시하시오. 단,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물음 3)** 위 (물음 2)의 정답이 8,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불공제할 금액으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불공제 사유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시오.

|  |  |  |
| --- | --- | --- |
| 불공제 사유 | 계산내역 | 금액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  |  |
| 총 액 | |  |

**(물음 4)**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금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5)** 2007년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할 경우 부담할 부가가치세 가산세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가산세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시오.

|  |  |  |
| --- | --- | --- |
| 가산세 항목 | 계산내역 | 금액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 |  |  |
| 총 액 | |  |

**세 법**

**12/16**

**제1교시**

**【문제 5】(15점)**

**(물음 1)**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답하시오.

|  |
| --- |
| **<자료1>**  1. 거주자 ‘갑’은 2006년 6월 30일에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로부터 토지 1필지를 100,000,000원(취득 당시 시가는 100,000,000원임)에 취득하였다.  2. 거주자 ‘갑’은 2007년 4월 30일에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병’에게 위 토지를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1)‘갑’이 ‘병’에게위토지를 양도할 당시 당해 토지의 시가가 ① 1,200,000,000원인 경우와 ② 200,000,000원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하시오.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없다면 그 근거를 기술하시오.

(2) ‘갑’이 ‘병’에게위토지를 양도할 당시 당해 토지의 시가가 ① 1,200,000,000원인 경우와 ② 200,000,000원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하시오.

**(물음 2)**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답하시오.

|  |
| --- |
| **<자료2>**  1. 2007년 3월 1일자로 ㈜금강은 ㈜화성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태양의 주식 400주(지분비율 40%)를 취득하였다.  2. 2007년 5월 1일자로 ㈜금강은 거주자 ‘갑’으로부터 ㈜태양의 주식 200주(지분비율 2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3. ㈜태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은 2007년 3월 1일 현재 900,000,000원이고, 2007년 5월 1일 현재 1,000,000,000원이다.  4. ㈜태양은 위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2006년 8월 1일자로 취득하였다.  5. 2006년 8월 1일 현재 ㈜태양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주이며 2007년 5월 1일까지 변동이 없었다. |

(1) ㈜금강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2) ㈜금강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물음 3)**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적용요건과 그 효과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끝-**

**세 법**

**제1교시**

**13/16**

여 백

여 백

**세 법**

**14/16**

**제1교시**

여 백

**세 법**

**제1교시**

**15/16**

여 백

**세 법**

**16/16**

**제1교시**

여 백